

공 유 재 산 관 리 계 획 안

(의안번호 제516호)

심 사 보 고 서

1998. 11. 27.

총 무 위 원 회

1. 심사경과

- 가. 제출일자 및 제출자 : 1998. 11. 21 고 성 군 수
나. 회 부 일 자 : 1998. 11. 23
다. 상 정 · 의 결 일 자 : 1998. 11. 27 상임위원회 상정 · 의결

2. 제안이유

- 당항포 국민관광지내 유물전시관을 건립하여 농경유물을 중심으로 한 각종 유물을 전시, 관광지내 청소년 교육자료 및 볼거리 제공으로 관광지 활성화에 기여
- 당항포 가족호텔의 건물 매각에 따른 사용부지 동시 매각으로 공사의 원활한 추진과 관광지의 이미지 제고 및 지방세수 확충을 위한 부지의 매각
- 고성군 지역농업개발센터 설치 편입부지 매입을 위해 지방재정법 제77조제1항 및 고성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유재산 관리 계획을 수립하여 승인을 득하고자함.

3. 주요골자

- 취득대상 재산
 - 소가야 유물전시관 건립
 - 재산의 표시 : 회화면 당항리 14외 2필지 1,250㎡ 중 연면적 600㎡
 - 재 산 가 액 : 650,000천원
 - 고성군 지역농업개발센터 편입부지 매입
 - 재산의 표시 : 고성읍 덕선리 산 33, 1,091㎡
 - 재 산 가 액 : 21,820천원

○ 처분대상 재산

· 당항포 가족호텔

- 재산의 표시 : 회화면 당항리 11-1 외 2필지, 104,069㎡ 중 2,929㎡

- 재산가액 : 91,970천원

4.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

- 제출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당항포 국민관광지내 유물전시관을 건립하여 농경유물을 전시하므로써 청소년 교육자료 및 볼거리 제공과
- 당항포 가족호텔 법적 소유권 확보로 인하여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가족호텔 건물 매각에 따른 편입된 사용부지 동시 매각으로 관광지 이미지 제고 및 세수확충을 기하고
- 고성군 농업개발센터 설치부지에 편입된 부지를 매입키 위한 계획안으로
- 지방재정법 제77조제1항 및 고성군공유재산관리조례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본 계획안을 승인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나
- 당항포 소가야 유물전시관 건립은 98년 2회추경때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에서 건립비 소요액 3억5천만원을 기 의결하였음에도 3억원을 증액하게 된 내용과
- 고성군 지역농업개발센터 편입부지는 기 제출된 토지대장 부분 내용과 같이 고성읍 성내리 130번지 옥천기화 개인소유가 되어 있음에도 충분한 사전조사 및 검토없이 1997. 3. 31 국유지(재정경제원 소관)로 소유권 이전하였다가 다시 개인 소유에게 되돌려 주는 행정낭비적 요인을 초래케 되었으며, 매입협의에도 가격문제 때문에 논란이 우려되므로 집행부의 충분한 설명을 듣고 심의하여야 될 것이라 하였음.

5. 질의 및 답변

- 문 : 당항포 유물전시관 사업비가 당초보다 3억원이 증액된 이유는
- 답 : 당초 폐교된 대가면 송계초등학교에 역사관 건립사업비가 유물전시관 사업으로 변경됨에 따라 전시유물관 규모로는 면적이 협소하여 명시이월 사업비 97년 송학교분군 전시관 건립비 3억원이 증액됨.
- 문 : 지역농업기술센터 편입부지 매입관련 협의사항은
- 답 : 토지소유자와 충분한 이해와 협의로 매수토록 노력

○ 문 : 당항포 가족호텔 매각관련 협의사항은

● 답 : 건물을 매각하기는 지난하고 부지와 동시 매각시에는 가능하다고 판단.

○ 문 : 당항포 가족호텔을 유물전시관 활용할 용의는

● 답 : 가족호텔 용도변경 사항은 도지사 허가 사항으로 어려울 것으로 판단됨.

6. 토 론 : 없음

7. 심사결과

○ 1998. 11. 27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